

벤처기업 외 벤처집적시설 입주가능 기업

□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**중소기업**

□ 또는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**중소기업**

(※ 관련 규정 :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2항)

지식기반산업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)	지식산업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)	정보통신산업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)
1. 엔지니어링사업 2. 전기통신업 3. 연구개발업 4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.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. 전문디자인업 7.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.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. 방송업 11. 정보서비스업 12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.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(자영예술가 제외) 14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4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. 광고물 작성업 6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. 출판업 8. 전문 디자인업 9. 포장 및 충전업 10. 교육 서비스업 11. 경영컨설팅업 12.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.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.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.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	1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. 자료처리, 호스팅(서버 대여, 운영 등의 서비스 를 말한다) 및 관련 서비스업 4.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. 전기 통신업 18.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.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. 무형재산권 임대업 21. 광고 대행업 22.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.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.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 (이 항 제7호,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 른 산업을 경영하는 업 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)

벤처집적시설 입주가능 지원시설

《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》

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
3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
4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(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·대리점 또는 사무소 포함)
5.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
6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7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8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
9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10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
11. 「산업발전법」(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
12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
1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
14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
15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
16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
17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18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
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
 - 다. 「변리사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
 - 라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
 - 마. 「세무사법」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
20.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

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내용

개 정 안

제6조(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추가지정) 시행령 제11조의 9제2항제6호의 “신기술의 개발·보급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 이나 제품·서비스를 개발·보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.

1. 인공지능·빅데이터(예: 컴퓨터비전,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, 고객데이터플랫폼, AIoT)
2. 미래 모빌리티(예: 전기·수소차, 자율주행시스템, UAM)
3. 바이오·헬스(예: 의약, 임상기술, 의료기기, 감염병 백신·치료)
4. 차세대 원전(예: 소형모듈원자로(SMR), 선진원자력시스템·폐기물관리)
5. 차세대 물류(예: 로봇·드론 배송)
6. 차세대 통신(예: 5G고도화, 6G, 오픈랜)
7. 로봇(예: 지능형·서비스 로봇, 스마트 시스템)
8. 친환경 에너지(예: 자원순환, CCUS, 친환경 신소재, 신재생, 이차전지, 에너지 절감)
9. 우주항공·해양(예: 위성, 발사체, 기지국, 비행체, 첨단선박, 해양지원탐사)
10. 양자 기술(예: 양자컴퓨팅, 양자센서, 양자통신)
11. 사이버 보안·네트워크(예: 복호화, 블록체인, 클라우드, 메타버스, 모바일 엣지컴퓨팅, 사물인터넷) (다만, 블록 체인의 경우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.)
12. 시스템 반도체(예: 로직·아날로그 IC, 마이크로컴포넌트)
13. 차세대 디스플레이(예: 프리폼 디스플레이, 무기발광디스플레이)

제6조의2(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신기술) 제6조 1호에서 13호 까지의 기술 이외에도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.